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 (담당: 김선희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날 짜 2016. 11. 11. (총 2 쪽)

보 도 자 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1.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 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

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